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41503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6. 10.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조국희	전자서명완료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5.2.27.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5. 28.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 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 분	점유의 권 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조유진	907호 전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주택임 차권자	2022.3.25.	120,000,000			2022.3.25.	2022.2.25.	
	907호 전부	권리신고	주거 주택임 차권자	2022.3.25.~2 024.4.22.	120,000,000			2022.3.25.	2022.2.25.	2025.6.13.
<비고> 조유진: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 조유진의 승계인으로 2025. 6. 13.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한 신고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대항력 포기서 제출됨.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41503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44, 53
어반스페이스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9번길 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아파트(도시형 원룸) 및 제1,2종근
린생활시설
지1층 741.41㎡
1층 190.2㎡
2층 362.75㎡
2층 199.48㎡
3층 362.75㎡
3층 199.48㎡
4층 362.75㎡
5층 362.75㎡
6층 362.75㎡
7층 362.75㎡
8층 362.75㎡
9층 362.75㎡
10층 362.75㎡
11층 362.75㎡
12층 362.75㎡
13층 362.75㎡
14층 354.7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9층90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7.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44
대 573㎡
2. 동 소 53
대 341.9㎡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914.9분의 4.8049

감정평가액 83,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7.06	83,000,000	8,300,000
2회	2026.08.03	58,100,000	5,810,000
3회	2026.09.14	40,670,000	4,067,000
4회	2026.10.26	28,469,000	2,846,900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
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
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
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대항력 포기서 제출됨.

열람용